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4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안철수 · 이만희
진종오 · 박성민 · 박덕흠
김상훈 · 김석기 · 서천호
유상범 · 박충권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면세유”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차세” 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,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.	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㉓ (생 략)	② ~ ㉓ (현행과 같음)